

■ 최신 법령 ■

[도산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

배성진 변호사 | 이강호 변호사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」이 2015년 6월 2일 대법원규칙 제2603호로 일부 개정되었고, **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**되었습니다.

개정 규칙은 중소기업 등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 시행(법률 제12892호, 2014. 12. 30. 공포, 2015. 7. 1. 시행)되고, 법률에서 위임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6236호, 2015. 5. 12. 공포, 2015. 7. 1. 시행)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**법률에서 위임된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**입니다.

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주요 내용

- 가.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채권자목록,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,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외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(제71조의2 신설).
- 나. 간이조사위원회와 관리인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을 정함(제71조의3 신설).

2. 다운로드 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